

①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

- (기존) 공시기준일(최근 반기말) 휴업중이어서 공시할 사항이 없는 보험대리점도 공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가 불명확
- (개선) 최근 반기말 현재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없는 보험대리점은 공시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화

②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, 설명의무 부과

- (기존)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알권리 보호에 미흡
- (개선)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그 사유 등을 설명하고, 자문결과를 보험회사가 인용하여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결과 등에 대해 설명토록 의무화

③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

* 금융위 보도자료(19.3.6) "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" 의 후속 조치로서, 현재 관련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(19.6.26 ~ 8.4)

- ① 대형GA(500인 이상)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고,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의 내용을 구체화
- ② 전년도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해 매년 완전판매 교육을 실시*하고, 교육대상·시간도 보험업계 자율협약 수준으로 강화

* (현행) 보수교육(2년마다, 25~32시간) 중 5시간 이상을 집합교육으로 실시